



Korean Tax Update

Samil Commentary

June 15, 2020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코로나 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알기 쉬운 관세법령 정비 추진

5 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예·적금, 주식·펀드 등), 6 월 30 일까지 신고

최신 세무예규판례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

2017년 6월 한국 정부대표가 서명, 2019년 12월 국회에서 비준동의한 "세원잠식·소득이전(BEPS) 방지 다자협약" 비준서를 정부는 2020년 5월 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기탁함. 비준서 기탁으로 기존의 양자조약 개정 대신 우리나라가 동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들과 체결한 조세조약에 대해 별도의 추가 협상 없이 조세조약 관련 BEPS 대응방안이 자동적으로 반영되게 됨. BEPS 다자협약은 2020년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발효될 예정임.

BEPS 다자협약 발효에 따른 우리나라 조세조약 주요 개정 효과는 다음과 같음.

(개정 대상 조약) 다자협약 비준서 기탁을 완료한 다른 국가와 우리나라 간 시행중인 조세조약으로서 해당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자협약 적용대상으로 OECD에 통보한 조약임. 우리나라는 비준서 기탁 시 현행 조세조약 93개중 73개를 다자 협약 적용대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중 32개 조약 상대국이 우리나라와의 조약을 동 협약 적용대상으로 하여 비준서 기탁 및 통보를 완료함. 73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약의 경우 양자 협상 등을 통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주요 개정 내용) 우리나라가 BEPS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이행의무가 있는 최소기준으로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및 분쟁해결절차 개선이 기대됨.

구 분	다자협약 규정 내용
6조 조약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조세조약 서문(Preamble)에 다음 문안을 포함 “대상 조세조약은 탈세·조세회피를 통한 세부담 축소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소득·자본 관련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의도함”
7조 조약남용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약혜택 이용을 주요 목적으로 거래 등 수행 시 해당 혜택 부인
16조 상호합의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i) 납세자는 특정 과세조치가 조세조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u>양체약국 중 어느 국가에라도 이의 제기 가능</u> (ii) 이의제기는 해당 조치에 대한 최초 통보로부터 3년 이내 가능 ② (i)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정당하되 이의제기를 받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상대국과 해결 노력 (ii) 양국간 상호합의된 사항은 국내법상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이행 ③ (i) 조세조약 해석·적용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간 노력 (ii) 조세조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해서도 양국간 협의 가능
17조 대응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국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상대국이 독립기업간 이루어졌을 가격으로 조정하는 경우, 일방국은 상대국의 가격 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 시 거주자의 소득 및 세액을 조정(대응조정)할 의무 부담

코로나 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

관세청은 코로나 19로 인해 수출 감소, 영업 적자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 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 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기업은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할 예정임. 또한, 관세청은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유지 기업도 유예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임.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할 것임.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자리 창출기업, 신설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크게 확대함.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알기 쉬운 관세법령 정비 추진

기획재정부는 관세법령 정비 방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9월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현행 관세법은 무역·통관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여 수출기업 및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 중 상당수가 관세청 자체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또한,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소액 개인통관 증가 등 관세행정 환경이 새롭게 변화함에 따라 관세법이 일반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법령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권리 및 접근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통관환경을 반영하기 위한 관세법령 개정을 아래와 같이 추진할 계획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관세법령의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보다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할 예정임. 또한, 관세법령에서 별도의 정의 없이 사용되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예:특송품, 세관공무원 등)는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할 것임.

(권리의무 규정 적정화) 관세청 규정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관세법령에 단계적 상향입법을 추진할 예정임. 2020년에는 관세평가, 여행자 통관, 이사물품 통관 관련 고시를 중점 검토하고, 상향입법안 마련 과정에서 고시의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설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임.

5 억 원 넘는 해외금융계좌(예·적금, 주식·펀드 등), 6월 30일까지 신고 필요.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그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함.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임. 또한, 2019년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짐.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계획임.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 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최신 세무예규판례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루어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라는 지방국세청의 종합감사로부터 약 3년 9개월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하였다는 사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함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해당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별다른 이유 없이 지방국세청의 지시를 처리하지 않은 점과 세무조사 결과통지일과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상적인 세무조사 이후 법정 기한 내에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국세행정을 장기간 해태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면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결정함.
(조심 2019 중 3428, 2020. 4. 27.)

이번 심판례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기존 심판례(조심 2016 서 2596, 2017. 6. 19.)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과세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처분이 지체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대법원 2019 두 49496, 2019. 11. 14.)을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20. 3. 12. 이전 민사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2020. 3. 13.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시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추가하면서 2020. 3. 13.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함.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의 대손사유에는 법인세법상 대손사유가 포함되는 바, 2020. 3. 12. 이전에 성립된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이번 사안의 쟁점임.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사업자가 2020. 3. 12. 이전에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으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거래처의 채무일부는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회신함. (사전-2020-법령해석부가- 0254, 2020. 4. 3.)

이번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대손사유에 민사조정법상 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포함한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규정의 적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개정 규정이 확인적 규정이 아닌 창설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사료됨.

Contacts

국제조세	내국세	이전가격 & 국제통상	해외파견 세무 및 기업운영지원
이중현 709-0598 alex.lee@pwc.com	오연관 709-0342 yeon-gwan.oh@pwc.com	이희태 3781-9083 heui-tae.lee@pwc.com	박진아 709-0797 jina.park@pwc.com
김상윤 709-0789 sang-woon.kim@pwc.com	이영신 709-4756 young-sin.lee@pwc.com	헨리 안 3781-2594 henry.an@pwc.com	상속증여 & 주식변동
이상도 709-0288 sang-do.lee@pwc.com	김진호 709-0661 jin-ho.kim@pwc.com	전원엽 3781-2599 won-yeob.chon@pwc.com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pwc.com
이동복 709-4768 dongbok.lee@pwc.com	황철진 709-0759 chul-jin.hwang@pwc.com	조정환 709-8895 junghwan.cho@pwc.com	이용 3781-9025 Yong.leei@pwc.com
정종만 709-4767 chong-man.chung@pwc.com	정복석 709-0914 boksuk.jung@pwc.com	김영주 709-4098 young-joo.kim@pwc.com	지방세
신현창 709-7904 hyun-chang.shin@pwc.com	남형석 709-0382 hyungsuk.nam@pwc.com	해외투자 세무자문	조영재 709-0932 young-jae.cho@pwc.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pwc.com	남동진 709-0656 dong-jin.nam@pwc.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pwc.com	비영리기업 지원센터
오남교 709-4754 nam-gyo.oh@pwc.com	나승도 709-4068 seungdo.na@pwc.com	세무진단 및 세무조사지원	변영선 3781-9684 youngsun.pyun@pwc.com
서백영 709-0905 baek-young.seo@pwc.com	노영석 709-0877 yongsuk.noh@pwc.com	김성영 709-4752 sung-young.kim@pwc.com	중소기업-스타트업 지원센터
차일규 3781-3173 il-gyu.cha@pwc.com	정선흥 709-0937 sun-heung.jung@pwc.com	금융세무	김봉균 3781-9975 bong-kyoon.kim@pwc.com
김광수 709-4055 Kwang.soo.kim@pwc.com	조성욱 709-8184 sung-wook.fs1.cho@pwc.com	박태진 709-8833 taejin.park@pwc.com	Knowledge & Innovation
류성무 709-4761 seongmoo.ryu@pwc.com	신윤섭 709-0906 yoon-sup.shin@pwc.com	정훈 709-3383 hoon.gp6.jung@pwc.com	조한철 3781-2577 han-chul.cho@pwc.com
김영옥 709-7902 young-ok.kim@pwc.com	선병오 3781-9002 byung-oh.sun@pwc.com	M&A 세무	삼일인포마인
로버트브로웰 709-8896 robert.bowell@pwc.com	장현준 709-4004 hyeonjun.jang@pwc.com	정민수 709-0638 minsoo.jung@pwc.com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최유철 3781-9202 yu-chul.choi@pwc.com	사모펀드에 대한 M&A 세무자문	
	박기운 3781-9187 ki-un.park@pwc.com	탁정수 3781-1481 Jeongsoo.tak@pwc.com	
		김경호 709-7975 gyungho1.kim@pwc.com	
		이종형 709-8195 Jonghyung.lee@pwc.com	



삼일회계법인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20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